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775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4일 발 의 자 :이광성, 권수정, 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 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김희걸, 노승재, 문장길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송재혁, 신정호, 양민규, 오현정, 유정희, 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최웅식, 황규복 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 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함(안 제15조제1항)
- 나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내용"을 "사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보전 • 관리"를 "보전 및 관리"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정의는"을 "뜻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지 구전체"를 "지구 전체"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창조를"을 "조성을"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"의회"를 "서울특별시의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"을 "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환경훼손의"를 "환경훼손에 관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항 중 "절약과 재활용 및"을 "절약 및 재활용과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환경시책"을 "환경보전시책"으로, "시에서"를 "시가"로 한다. 제9조제2항 중 "시에"를 "시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"을 "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"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"을 "사업 시행에 드는"으로, "방법"을 "방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배치되지"를 "어긋나지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이의 유지를"을 "이를 유지하기"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"을 "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"을 "(공공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공시설"을 "공공환경시설"로, "사업의 실시에 있어"를 "사업을 시행하는 경우"로,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소요되는"을 "드는"으로,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소요되는"을 "드는"으로, "범위 안"을 "범위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행하는"을 "수행하는"으로, "필요한"을 "대해 필요한"으로, "범위 안에서 포상 할"을 "범위에서 포상할"로 한다.

제23조 중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시책에 대하여"를 "시책을 추진하는 경우"로, "지방자치단체 와 협력하여 그 추진"을 "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"으로 한다. 제24조의2제2항제5호 중 "정하는"을 "인정하는"으로 한다.

제24조의3 중 "자치구로부터"를 "자치구에서"로, "협약"을 "시 또는 자치구와 협약"으로, "책임"을 "대해여 그 책임"으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"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"을 "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해"로 하고. 같은 조 제2항 중 "이루어 질"을 "이루어질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"강구"를 "마련"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2항제3호 중 "법령"을 "그 밖에 법령"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"환경교육·홍보활동에"를 "환경교육·홍보활동의"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"감시 · 측정"을 "감시 · 측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제1항의"를 "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"을 "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추진현황"을 "추진에 관한 사항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본원칙) 시는 다음 각 호의 <u>내</u>	제3조(기본원칙) <u>사</u>
<u>용</u> 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	<u> ই</u> }
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생활환경・자연환경・지구환경의	2
<u>보전·관리</u> 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	<u>보전 및 관리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4조(정의)
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뜻은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지구환경보전"이란 지구온난화,	6
오존층파괴, 해양오염, 생물다양성	
의 감소 등 <u>지구전체</u> 또는 광범위	<u>지구 전체</u>
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	
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	
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	
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	
하는 것을 말한다.	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시의 책무) ① 시는 환경보전 및	제5조(시의 책무) ①
새로운 도시환경의 <u>창조를</u> 위하여	<u>조성을</u>
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	
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	

를 진다.

- 1. ~ 11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5조의2(보고) ① 시는 매년 주요 환 경보전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환경오염, 환경훼손의 사항
 - 2.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
 - 3. (생략)
- 제7조(사업자의 책무) ① (생 략)
 -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. 제품의 제 조・가공・판매・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 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 감에 노력하고, 시 환경기준의 달성 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③ ~ ④ (생 략)
- - ② 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 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 할 권리를 가진다.

- 1. ~ 11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5소의2(보고) ①	
	<u>서울특</u>
<u>별시의회</u>	
	3 6 -1

-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│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-----.
 - 1. ----- 환경훼손에 관한 ----
 - 2. 환경보전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
 - 3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사업자의	책무)	(1)	(혀행과	같음)

②
<u>절</u>
<u>약 및 재활용과</u>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시민의 권리) ① (생 략) 제8조(시민의 권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	<u> 환경보전시책</u>
	<u>入</u>
<u>7</u> }	

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(생 략) 제9조(시민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 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 ③ ~ ④ (생 략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환경계획) ① 서울특별시장(이 제11조(환경계획) ① -----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시책 ----- 환경보전시책 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 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계획(이하 "환 경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.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4. 사업 시행에 드는 --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_____ 방안 5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④ (생 략)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. 제14조(시 환경기준의 설정) ① 시장은 제14조(시 환경기준의 설정) ① -----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2조제3항에

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

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) ① 시 장은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의 유지가 <u>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</u>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. ② (생 략)

제18조(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시는 폐기물 및 물재생시설,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<u>강구</u>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
① 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
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
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
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·재활용
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<u>강</u>
구하여야 한다.

② 시는 <u>공공시설</u>의 설치 및 유지·

<u>o</u>]
를 유지하기
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) ①
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대
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에 따른
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공공환경시설의 설치・관리 등)
l -z)
<u>마련</u>
제19조(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)
①
ㅁ}
근 런
으 곳곳화겨시선

관리, 그 밖의 <u>사업의 실시에 있어</u> 제1항과 같은 조치를 <u>강구</u>하여야 한 다.

③ (생략)

- 제21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시는 자치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<u>범</u>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·사업자 ·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·운영 또는 조사 ·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·기술·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할 수 있다.
- 제23조(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)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<u>강구</u>하여야한다.

<u>사업을 시행하는 경우</u> -
마련

③ (현행과 같음)
제21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
등) ①
6) ① <u>드는</u>
<u>마련</u> ②
<u>드는</u> <u>범</u>
<u>위</u>
③
<u>행하는</u>
<u>대해 필요한</u>
<u>범위에서</u>
<u>포상할</u>
제23조(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)
마련
<u>" 긴</u>
•

- 제24조(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의 협력)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<u>시책에 대하여</u> 국가 및 다른 <u>지방자치단체와</u>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(생략)
- 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 ① (생 략)
 - ②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지역 도 시정부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맑은공 기 도시네트워크(이하 "협의체"라 한 다)를 구축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 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
 -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<u>정하</u> 는 사항
 - ③ (생략)
- 제24조의3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 시 또는 <u>자치구로부터</u> 수탁사업, 보 조금 등의 행정적, 기술적, 재정적 지 원을 받거나 <u>협약</u> 등을 체결한 공공 기관, 사업자, 단체, 시민 등은 대기 질 개선, 자원순환, 신·재생에너지

제24조(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
의 협력) ①
<u>시책을 추진</u>
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
의 협력
②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2(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)
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4. (현행과 같음)
5 <u>인정</u>
하는
③ (현행과 같음)
제24조의3(환경보전 시책에 대한 협력)
<u>자치구에서</u>
기 ㅠㄴ 키리그시 줘사
<u>시 또는 자치구와 협약</u> -

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환 ----- <u>대해여 그</u> 책임-----경보전 시책에 책임과 역할을 인식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제25조(정보의 공개) ① 시는 환경보전 제25조(정보의 공개) ① -----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 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----- <u>범위에서 환</u>경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 전에 관해 -----개하여야 하다. ② 시는 환경정보공개가 원활히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 력하여야 한다. 제26조(시민참여 등) ① 시는 환경보전 제26조(시민참여 등) ① -----시책 결정 ·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 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 ----- <u>마련</u>-----. 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제26조의2(환경보전에 관한 자문) ① (생략) (현행과 같음) ② 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제1항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1. ~ 2. (생 략) 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는

3. <u>그 밖에 법령</u> -----

환경보전에 관한 사항	
제27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① 시는 자치구, 교육기관, 민간단체, 그	제27조(환경교육·홍보 등의 진흥) ①
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·보급 및 <u>환경교</u> 육·홍보활동에 진흥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 략)	
제28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 ① 시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<u>감시 ·측정</u> 등의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	제28조(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) ① <u>감시·측정</u>
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한다. ② 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,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. ③ (생략)	
제29조(환경백서) ① (생 략) ② <u>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</u>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(생 략) 2.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<u>추</u>	제29조(환경백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1. (현행과 같음) 2 추
<u> 진현황</u>	진에 관한 사항

3. (생략)

3. (현행과 같음)